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배포시	배포	2023. 7. 27. (목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사기전담대응단	책임자	팀 장	서강훈	(02-3145-8521)
	금융사기대응2팀	담당자	선 임	윤형석	(02-3145-8534)

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!!!

□ 소비자경보 2023 - 18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협
대상	자영업자, 소상공인, 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내용

◆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

-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는,
- 자영업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상품권을 구매*하여 이를 사기범 직원 또는 우편으로 전달토록 요청

* 상품권 구매자금은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영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임

◆ 기존 정부지원 대출방자 금융사기와 달리 대출금 상환, 수수료 등 명목의 금전 편취보다는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달 수단으로 이용

⇒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,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

(지급정지)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·이체된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라도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

(거래제한)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

1 구체적인 사기 수법

-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에 필요하다는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
 -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
 - 상품권 매입금액도 자기들이 지원해준다고 하여 이에 응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

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빙자한 사례

- ◆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는 대출이 필요하여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음
 - 사기범은 A에게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단기간 고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 구매를 권유
 - A는 상품권 대금은 사기범이 입금할 것이며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수수료도 많아진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카드 결제 계좌번호*를 사기범에게 알려줌
 - * 사기범이 다른 쪽에서 작업 중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로 입금을 유도
 -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A는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기범이 지정한 인물에게 전달하였으나, 이후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

※ 신종 보이스피싱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수집한 사례로 신속히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금융업권에 전파

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



연 4.9% 최저금리
금융 채무 통합
자영업자, 사업자 대출

개인정보 수집화면

간편 상담신청

(당첨자 선정 등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)

당첨자 선정(당첨률)

대표자(이름) 핸드폰번호

사업자 구분 ☐ 개인 ☐ 법인 ☐ 기타

카드사용여부 ☐ 예 ☐ 아니오

계좌입금 가능하고 계신가요? ☐ 예 ☐ 아니오

(당첨률, 실적 등)

신용정보, 개인회생, 파산판결, 세금체납 등 정보
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? (당첨률에 영향을 미칩니다.)

☐ 예 ☐ 아니오

금리 10% 이상의 금융권을 선택해주세요. (대출채무를 선택해주세요/ 중복선택가능)

☐ 은행&수당사 ☐ 저축&저축 ☐ 카드사 ☐ 내부 ☐ 기타

자영업등록지

03550

자영업등록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
◎ 개인정보수집목적 이용 동의 자세히보기

2 소비자 유의 사항

◆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,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!

□ 사기이용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정지됩니다

-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·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*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

* (피해자) 피해구제 신청 → (금융회사)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→ (금감원) 사기이용계좌 채권 소멸 → (금융회사) 피해금 환급

- 또한,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면 지급정지 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

□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

-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·연루될 경우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
3 소비자 행동 요령

◆ 대출상담으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**선제적 주의 환기** 필요

□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

-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,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*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

* 금융감독원 '금융상품 한눈에'(finlife.fss.or.kr)에서 은행,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 비교 가능

- 또한,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 우려

□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세요!

① 계좌 지급정지

-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**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(☎1332)**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**계좌 지급 정지**
- 가까운 **경찰서에 방문**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'**사건사고사실확인원**'을 발급받아 **3영업일내**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



② 내계좌 통합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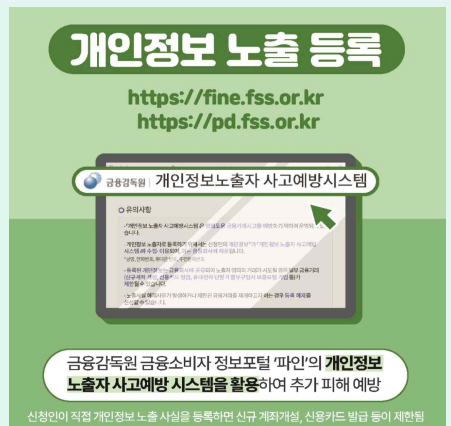
- '**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**'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**확인**하여 **명의도용 피해**가 없는지 **확인**
- 본인 **모르게**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'**내계좌 지급정지**' 메뉴에서 **일괄 지급정지*** 가능

* '23.7.5.부터는 신청채널을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



③ 개인정보 노출 등록

-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**개인정보가 노출된** 경우 **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** (<https://pd.fss.or.kr>)에서 '**개인정보노출자**'로 **등록**
-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**신규 계좌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**



④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

- '**명의도용 방지서비스(www.msafar.or.kr)**'를 이용하여 본인 **모르게** 개통된 이동전화, 인터넷 전화 등 **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**
-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시 해당 **통신사** 등에 연락하여 **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**
- 본인명의 이동전화의 **신규 개설 차단 신청**

